2024 식품외식기업 인턴십 지원사업 참가기업 추가모집 공고

「2024년 식품외식기업 인턴십 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참가기업 추가모집을 공고하오니 식품・외식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4. 9. 1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1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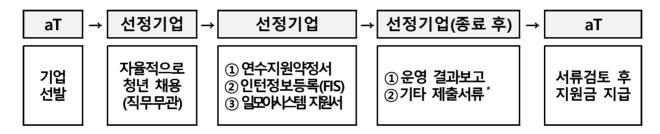
□ 사업목적

○ 청년의 식품·외식분야 기업 체험을 통해 **직업탐색 및 현장 실무경험 기회** 제공, 식품·외식분야 진출기반 마련으로 **청년 일자리 저변확대 도모**

□ 사업내용

- (모집대상)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식품·외식기업 으로 아래의 조건을 갖춘 기업
 - 식품제조·가공, 단체급식, 외식체인, 식품서비스 등 식품·외식산업 관련 기업
 - * ① 식품제조·가공(영업등록증 또는 신고증 필수), ② 농식품 유통(도소매, 수출업체, 단체급식 식자재 업체 등), ③ 외식프랜차이즈(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정보공개서 등록 기업),
 - ④ 식품서비스(농식품 구독서비스 제공기업 등)에 따름
 - 인턴 채용인원의 50% 이상 정규직으로 전환 예정인 기업
 - * 청년 : 채용시점 기준 만 19세 이상·34세 이하(다만, <u>지원기업이 소재한 지지체의 조례에서 정한</u> '청년 연령 기준' 적용 가능, 복수사업장의 경우 인턴근무지 사업장 기준), 학력제한 없음
 - 기간제 근로자. 수습기간이 있는 근로자는 지원 가능하나. 체험형 인턴은 지원 불가
 - ** 기업요건 : 국내 식품·외식기업,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지원 제외
- (지원기간) 2024.1월 ~ 12월('24.11.29일까지 인턴십을 수료한 자에 한함)
 - * '23-'24년 인턴십 완료후 '24년 정규직 전환되어 재직 중인 인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O (기업선정) 권역 제한없이 기업 선발
 - ※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경우 선정 평가시 우대
 - ※ '24년 동 사업에 기선정(선정후포기 포함)된 기업의 경우 선정 제외
- (신청인원) 총 60명 내외(기업별 최대 30명 신청) * 신청수요에 따라 승인 인원 조정
- (운영절차) 사업신청서 제출 및 aT 승인 후 채용공고 및 채용 진행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기업 채용 기실시 및 일정이 촉박한 경우, 선 채용 후 지원 기능 <운영과정>



(정산시 제출서류) 인턴 근로계약서, 정규직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내역(급여명세서, 급여이체증 등), 인턴별 활동보고서, 교육수료증, 통장사본, 기업의 4대보험 및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종료시점), 채용자의 4대보험 가입내역(인턴종료 익월) 등 aT가 요구하는 서류

- (지원내용) 1인당 100만원/월(최대 3개월) 지원
 - 예산 소진 시에는 일부 인원에 한하여 지원기간 2개월 축소지원

구 분	내 용
인턴지원금	· 인턴고용 비용지원 - `24년 채용 인원수×100만원(1개월 기준)×최대 3개월 * 1개월 미만 근무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최소 1개월 이상 근무)

- (교육지원) 인턴 대상 식품위생교육 등 제공으로 식품산업 진출 사회 초년생 대상 기초소양 능력 제고
- (패널티 부여) '24년 사업 포기 및 최초 신청에 따른 승인 인원 대비 채용 인원이 미달될 경우, 차년도 사업 선정 평가시 5점 감점 부과

■ 신청기간 : 공고일 ~ '24.9.24(화) 18:00까지(신청서 제출기준)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제출

○ 제출방법 : aT FIS식품산업통계정보(www.atfis.or.kr) - 지원사업 -

일자리정보 - 인턴십지원

- O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및 자가진단서(인감날인본)
 - 사업자등록증
 - 영업등록증 또는 영업허가증
 -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必)
 - 4대 보험 및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22~'23년도 4대보험 산출내역서, 전년도 재무상태표(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기타 aT가 요구하는 자료

유의사항

-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 이후라도 취소할 수 있음
- 모집일 기준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 중인 기업
- 채용기업의 사업주와 배우자, 직계인척, 직계존비속, 혈족 관계에 있는 자를 채용하는 기업
- □ 준수사항
 - 근로기준법 법정근로시간(월209시간, 주40시간), 2024년 최저임금(9,860원/시간) 운영
 - 기업은 해당인턴에 대해 4대보험 가입 의무(인턴 채용인원 50%이상 정규직 전환 必)

3 심사 및 선정

□ 선정일정 : (심사/발표) 9~10월초 중

□ 평가내용 : 재무건전성, 일자리창출, 사업기간 항목 등

□ 평가방법 : 서류평가 100%

□ 선정기준

- 계량(100%)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권역별로 고득점한 사업자
- O 경합될 경우 재무건전성, 일자리창출 배점 순으로 높은 기업을 선정
- O 선정 후 인원 미달 시, 권역 제한없이 참가기업 추가 선발
- O (패널티 부여) '23년 사업포기 및 최초 신청일 승인 인원 대비 채용 인원이 미달된 경우, 차년도 사업 감점 부과
- (경합시 우대사항) AGRIX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제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aT 식품외식지원부(※ 061-931-0724)로 문의바랍니다.

2024년 식품외식기업 인턴십 지원사업 참가 신청서

기업명	00식품	대표자	홍길동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법인등록번호	111111-1111111	
기업유형	단체급식, 식품제조	담당자	홍길동/인사팀/010-000-0000	
사업장 주소	전남 나주시 문화로 227			

<상세 채용 계획>

직무	경영관리	품질관리	영양자	영업관리
채용 인원	00명(3개월)	00명(3개월)	00명(6개월)	00명(3개월)

<신청 권역> *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 해당기업의 채용인원 작성(신규 채용대상자의 근무지가 아님)

구분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강원권	충청 (충남.충북.대전.세종)	호남 (전남.전북.광주.제주)	영남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
채용 인원	00명				

계획 인원 대비 인턴 채용을 미달성할 경우, 차년도 사업 참여 불가 등의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위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____(인 또는 서명)

인턴 채용 시, 채용인원의 50%이상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위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____(인 또는 서명)

위 기재사항과 제출서류는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식품외식기업 인턴십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4 년월일대표자_____(인 또는 서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장 귀하

참가기업 자가 진단서

식품외식기업 인턴십 지원사업 참가기업 자가 진단서

- ✔ 식품외식기업 연계 인턴십 지원사업은 농식품기업, 외식기업이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 후, 최소 50%이상 정규직 전환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 지원을 위해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해당 부분(예, 아니오)에 체크표시(√)해 주시기 비랍니다.
- ✔ 기재된 제출서류를 확인하시어 누락분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단 제물자표를 국민하다의 부국군없이 제물이의 부가가 되답되다.		
	신청기업 자격 요건	예	아니오
1.	신청 기업은 농식품 · 외식기업 입니다. * 사업자 등록증 제출		
2.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근로자 채용 등 조건으로 금전적 지원(인건비)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반드시 참가기업 담당자가 판단하여야 합니다)		
1.	신청대상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를 원칙으로 합니다.		
2.	신청대상 근로자는 월임금이 최저 임금이상 입니다.		
3.	신청대상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 해 있습니다.		
	신청대상 근로자는 채용당시 재학생(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이 아닙니다. 인턴 채용시점에 최종학교 졸업예정자인 경우 졸업(수료)예정일 기입 : (년 월 일) * 확인자료 별도 첨부 제출		
5.	신청대상 근로자는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 배우자, 직계인척, 직계존비속, 혈족 관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6.	신청대상 근로자는 채용당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자영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신규채용 전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습니다 .		
8.	신청대상 근로자는 일학습병행제 참여자로 등록 된 근로자가 아닙니다.		
9.	신청대상 근로자는 외국인 이 아닙니다.		
	기타		
1.	사업주는 식품외식기업 인턴십 지원사업 지원 신청 시 동 지침을 명확히 숙지 하고 있습니다.		
2.	신청대상 근로자가 중도 퇴사할 경우 지원 대상 및 인원에서 제외 됨을 확인합니다.		
3.	지원금 지급신청시 제출한 자료는 모두 사실과 다름 없음 을 확인합니다.		
4.	참가기업 소속 근무자가 부정수급, 직장내 괴롭힘 등 신고할 수 있는 FIS식품산업 통계정보 내 '식품외식기업 인턴십 지원사업 고충신고'를 숙지하고 있습니다.		
랻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 가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원된 지원금을 반환조치합 변 <mark>법령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차년도 사업 참여에 제 을 확인합니다.</mark>	니다. 또	한 관
	년 월 일		
	사업장명 :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대표자) :

참고 광역지자체(17곳) 조례별 청년 연령 기준

광역(시·도)	구분	청년 연령 기준	근 거
특별시	서울특별시	19세 이상 39세 이하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3조 1항)
	부산광역시	18세 이상 39세 이하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3조 1항)
	대구광역시	19세 이상 39세 이하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1장 제2조 1항)
광역시	인천광역시	18세 이상 39세 이하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3조 1항)
	광주광역시	19세 이상 39세 이하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제2조 1항)
	대전광역시	18세 이상 39세 이하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1장 제2조)
	울산광역시	19세 이상 39세 이하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 1항)
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19세 이상 39세 이하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제1장 제3조 1항)
	경기도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제3조 1항)
	충청남도	19세 이상 39세 이하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제1장 3조 1항)
도	충청북도	19세 이상 39세 이하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제3조 1항)
_ _	전라남도	18세 이상 45세 이하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제 3조 1항)
	경상남도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제3조 1항)
	경상북도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제2조 1항)
	강원특별자치도	18세 이상 45세 이하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1장 3조 1항)
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18세 이상 39세 이하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1장 2조 1항)
	제주특별자치도	19세 이상 39세 이하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3조 1항)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